

수 품 향 정 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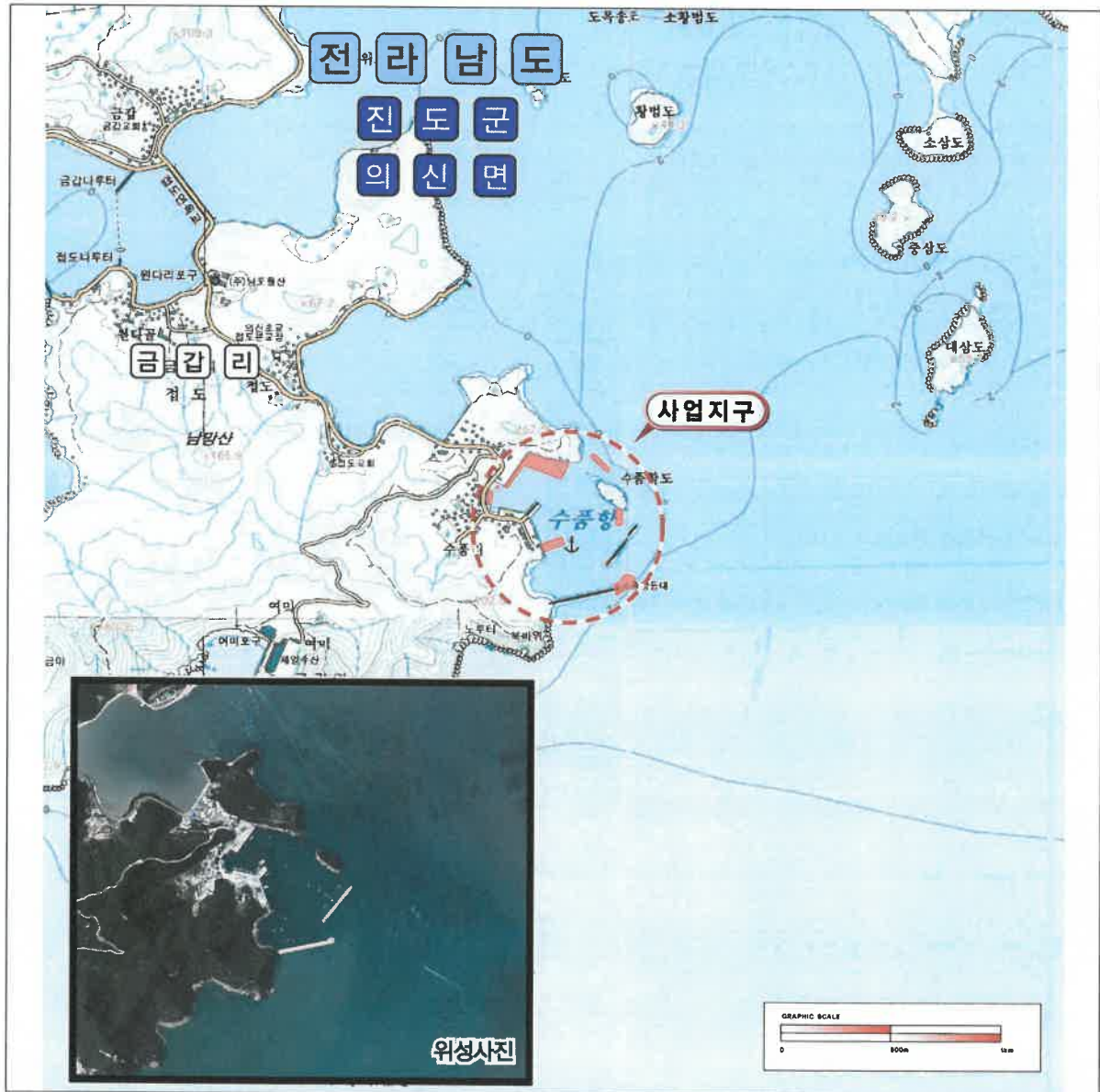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수품항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전면해역 일원
- 사업규모 : 외곽시설 320m, 계류시설 440m(남측돌제 겸용 포함시 570m), 부지조성 19,227㎡
- 사업기간 : 착공 후 4년
-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2. 위치도



3. 주민 등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부터 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음
-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해양수산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진도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3.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고일자

- 진도군 공고 제2018-300호(2018년 7월 10일)
- 일간신문 : 일간투데이(2018년 7월 10일)
- 지역신문 : 광주일보(2018년 7월 10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8년 7월 10일 ~ 2018년 8월 7일(25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진도군 녹색산업과,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수품항 어민회관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8년 7월 10일 ~ 2018년 8월 14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주민의견 등록

라. 공개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마. 공람 결과

-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 총 13건(서면제출)
- 공청회 개최 여부

구 분	주민의견서 제출	공청회 요구
제출인원	13명	해당없음

(공청회의 개최 법적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 이상인 경우

진도군 공고 제2018-300호

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0일
진도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수품항 정비사업
- 나.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전면해역 일원
-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L=340m), 계류시설(L=550m), 물양장 21,270㎡
- 라. 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마.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8년 07월 10일 ~ 08월 07일(25일간,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진도군 녹색산업과,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18년 07월 17일(화) 오후 2시
- 나. 장소 : 수품항 어민회관


4. 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 가.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의견
- 나. 제출기한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061-280-1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공고문

<p>일간투데이 (8면)</p>	<p>진도군 공고 제2018-300호</p> <p>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년 7월 10일</p> <p>진도군 </p> <p>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수품항 정비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전면해역 일원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L=340m), 계류시설(L=550m), 물양장 21,270㎡ 라. 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마.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p> <p>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07월 10일~08월 07일(25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진도군 녹색산업과,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p> <p>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8년 07월 17일(화) 오후 2시 나. 장소 : 수품항 어민회관</p> <p>4. 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가.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의견 나. 제출기한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p> <p>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광고문은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p> <p>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061-280-1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광주일보 (21면)</p>	<p>진도군 공고 제2018-300호</p> <p>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수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18년 7월 10일</p> <p style="text-align: right;">진도군수</p> <p>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수품항 정비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전면해역 일원 다. 사업규모 : 외곽시설(L=340m), 계류시설(L=550m), 물양장 21,270㎡ 라. 시행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마.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p> <p>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07월 10일 ~ 08월 07일(25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진도군 녹색산업과,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p> <p>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8년 07월 17일(화) 오후 2시 나. 장 소 : 수품항 어민회관</p> <p>4. 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가.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의견 나. 제출기한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p> <p>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광고문은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p> <p>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061-280-1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그림 2) 신문공고



(그림 3) 홈페이지 게재

3.2 설명회

가. 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 개최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14시

※ 설명회 개최일시(당초) 2018.07.17. 14:00

(변경) 2018.07.17. 14:00(주민미참석), 2018.07.17. 17:00(주민요청)

○ 개최장소 : 수품항 어민회관

다. 설명회 개최 결과

○ 정상진행

○ 참석인원 : 약 20명(참석자 명부 19명)



(그림 5) 설명회 개최 사진

3.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p>1. 총괄</p> <p>○본 사업은 수품항 항내 정온도 개선과 노후화 된 어항시설의 정비를 위해 외곽 시설과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p> <p>-아래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검토·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	-
		<p>○매립지 위치와 규모, 매립 목적, 매립지 토지이용계획, 매립 필요성과 매립방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매립지 위치와 규모, 매립 목적, 매립지 토지이용계획, 매립 필요성과 매립방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제시함	반영
		<p>○어항구역의 경우, 육상부와 해수부 면적을 구분하여 변경 전·후 어항구역 면적을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p>	○금회 개발사업에 따른 어항구역의 면적 변화를 제시하였음	반영
		<p>○금회의 어항개발 사업은 자연환경, 항내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사업으로 입지와 배치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p> <p>-사업지구 동측 물양장 설치예정 해역은 다양한 부착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 경관이 양호한 암반조건대 지역으로 이 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따라서, 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돌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파제제 110m 신설·설치사업 또한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p>	○개발사업으로 입지와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자연환경, 항내 해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함	반영
		<p>-사업지구 동측 물양장 설치예정 해역의 부착동물 등 서식현황을 제시하고, 수품항내 물양장 위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제시하였음</p> <p>- 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돌제 설치 여부 등 대안을 검토하고, 파제제는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였음</p>		
<p>○매립예정지는 법정보호종의 서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개발 사업에 따른 “법정보호종(갈피류) 피해 방지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함.</p>	○매립예정지의 법정보호종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개발 사업에 따른 “법정보호종(갈피류) 피해 방지계획”을 작성·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p>II. 평가항목별 검토의견</p> <p>1. 자연생태환경 분야</p> <p>가. 동·식물상</p> <p>○동측 물양장 설치 예정해역은 다양한 부착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양호한 암반조건대 지역으로 본 해역을 매립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p>	<p>○물양장 설치 예정해역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 검토하고,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측면을 대안별로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였음</p>	부분 반영
		<p>○따라서, 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돌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파제제 110m 신설·설치사업 또한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p>	<p>○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돌제 설치 여부 등 대안을 검토하고, 파제제는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였음</p>	반영
		<p>○해양동·식물상에 대하여 1회 조사하고 잘피의 종류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2계절 이상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해양동·식물상 3계절(잘피조사 2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제시하였음 - 조사결과 : 거머리말</p>	반영
		<p>-조건대 저서생물과 해조·초류에 대한 조사결과는 서식지도로 작성·제시하고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서식지는 정확한 분포현황 파악을 위해 잠수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조하대 해조류에 대한 조사도 병행).</p>	<p>- 조건대 저서생물과 해조·초류 및 조하대 해조류에 대한 조사결과는 서식지도로 작성·제시하고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서식지는 정확한 분포현황 파악을 위해 잠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였음</p>	반영
		<p>○「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별표6(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대상지에 법정보호종(자연환경자산)이 서식하고,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는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나</p> <p>-평가서(초안)에 개발계획 대상지에 법정 보호종 잘피류(거머리말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서식지가 영향(부유물질 오염, 생육저해 등)을 미칠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134쪽, 147쪽),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작성·제시하지 않았음.</p>	<p>○「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별표6(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함에 따라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p> <p>- 개발계획 대상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정보호종 잘피류(거머리말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작성·제시하였음</p>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또한 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에는 피해기준, 피해영향 조사방법, 대체 서식지 적지조사, 서식분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저감방안 작성시 피해기준, 피해영향 조사방법, 대체서식지 적지조사, 서식분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하였음	반영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본안)에 “법정보호종(갈피류) 피해방지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갈피류) 보존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개발대상 해역의 특성(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내 조류, 303~304쪽)과 수심도(서식수심 0~3m, 265쪽)을 검토한 결과, 대상종이 매립을 계획한 “동측물양장 시설지역”, “파제제 시설 지역” 및 “동방파제신설 부근” 등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에 보호종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서식이 확인될 때에는 대체서식지 이식계획 및 개발계획 축소 등 피해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동측물양장 시설지역”, “파제제 시설 지역” 및 “ 동측파제제신설 부근” 등 신규부지 등에 대해서 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개소에서 갈피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서식지의 갈피는 대체서식지 이식계획 및 개발 계획 축소 등 피해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또한 부유물질 피해 영향권을 중심으로 법정보호종 정밀모니터링(관련 분야 전문가를 동반한 잠수조사 실시)을 실시하고, 피해가 확인될 때에는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적지 조사를 실시 후, 관련분야 박사급 이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고 이식 이후 영구방형구 설치, 이주에 따른 피해기준 설정 등 모니터링 계획(이주 후 3년간)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부유물질 피해 영향권을 중심으로 법정보호종 정밀모니터링(관련분야 전문가를 동반한 잠수조사 실시)을 실시하였으며,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고, - 갈피이식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2. 대기환경 분야 가. 대기질·악취 ○준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전량 물양장 배후부지 매립재로 활용할 계획이므로(평가서 410쪽), 준설토의 안정화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준설토의 안정화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 ○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라 용수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평가서 234쪽)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용수공급량을 산정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용수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수품항 정비사업으로 방파제, 돌제, 파제제, 물양장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운영시 용수공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반영
		○계획부지로부터 발생하는 오수를 「수품마을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예정이므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 133호)」을 참조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수품항 정비사업으로 방파제, 돌제, 파제제, 물양장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운영시 용수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오수발생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반영
		나. 해양환경 ○해양수질과 저질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2계절 이상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3계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본문에는 조사결과를 부록에는 분석기록지를 첨부·제시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 공인된 표준물질(NASS-7)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본문에는 조사결과를, 부록에는 분석기록지를 첨부·제시하였음	반영
		○3차원 해수유동실험을 실시하였으므로 수직 격자체계를 제시하고 조류 검증 결과는 단순 시계열 그래프로만 제시하여 모델 재현기간 중 편차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각 정점별, 분조(4대분조)별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비교·검증하고, 그 검증치(편차, 에러율)를 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3차원 해수유동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수직 격자체계를 제시하였고, 각 정점별 분조(4대분조)별 비교·검증하고, 검증치(편차, 에러율)를 표와 함께 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물질확산과 이동 예측은 잔차류의 검증이 중요하므로 연속조류 관측성과로부터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물질확산과 이동 예측은 잔차류의 검증이 중요하므로 연속조류 관측성과로부터 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영향예측결과는 표층, 중층, 저층에 대해 대조기, 소조기, 최강 창조시, 최강 낙조시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유속변화도는 수치와 백분율(%)로 제시하여야 함.	-영향예측결과는 표층, 중층, 저층에 대해 대조기, 소조기, 최강 창조시, 최강 낙조시를 기본으로 제시하였고, 유속변화도는 수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음.	반영
		○침퇴적실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침퇴적실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점착성과 비점착성의 입력자료 중에서 모델링에 사용한 퇴적한계 전단응력, 침식한계 전단응력, 기준 침강속도 등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점착성과 비점착성의 입력자료 중에서 모델링에 사용한 퇴적한계 전단응력, 침식한계 전단응력, 기준 침강속도 등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반영
		-입력자료는 해외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용한 수치가 대상해역에 적합한 자료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대상해역 적합여부는 실제관측을 통해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실제관측 및 주변지역 사례를 통한 계수평균값의 적용은 어려운 실정임	미반영
		○오탁방지막 저감효율은 단일 오탁방지막 30%, 2중 오탁방지막 50%로 선정하되 예측결과는 대조기와 소조기 조건에서 창조시와 낙조시로 최대 확산범위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	○오탁방지막 저감효율은 이중오탁방지막 50%로 선정하였고, 예측결과는 대조기와 소조기 조건에서 창조시와 낙조시로 최대 확산범위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였음	반영
		-부유사확산 실험결과는 확산농도뿐만 아니라 배경농도를 기준으로 공사로 인해 가중되는 농도를 백분율(%)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	-부유사확산실험 결과는 확산농도뿐만 아니라 배경농도를 기준으로 공사로 인해 가중되는 농도를 백분율(%)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였음	반영
		○해수교환율 실험 시 항 전체를 대상으로 예측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곳은 가장 안쪽의 향내측(물양장 내측)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해수교환율실험시 물양장 내측구역 및 수품항 내측구역으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p>○본 개발사업에 호안을 신설·보완을 위해서는 사석을 대량 공급하여야 함에도, 금회 평가서(초안)에는 사석 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396쪽)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서(본안)에 사석 공급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함.</p> <p>*「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2012, 해양수산부)」제5장(사석고르기)에 따라 사석별 적정 압축강도(내부사석 50, 피복석 100)를 석재원별로 분석·제시하고, 사석 공급은 석재원 선정 기준(석재원별 운반 거리, 운반비용 등 경제성 분석 등)을 명시.</p>	○사석공급에 대한 석재원 선정기준, 운반거리, 비용 등 경제성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하였음	반영
		○석회성분이 포함된 사석과 피복석을 공사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갯녹음 현상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석회성분이 포함된 사석과 피복석의 공사재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갯녹음 현상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p>4. 토지환경 분야</p> <p>가. 토지이용</p> <p>○사업지구 동측의 신규 물양장이 입지하는 지역은 해안 암반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있음. 따라서 동측의 신규 물양장 조성사업은 지양하여야 함.</p>	○동측물양장의 설치예정지 상부는 사유지로 기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해안의 자연성유지를 통한 양호한 경관유지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품항 여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물양장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부분 반영
		<p>5. 생활환경 분야</p> <p>가. 친환경적 자원순환</p> <p>○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p> <p>-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량과 위탁처리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p>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총괄표작성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종류별 총괄표를 제시(건설, 임목, 생활, 사업장,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된 폐기물량과 위탁처리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수거한 날짜와 양을 제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와 별도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계약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시행된 연도의 근거자료를 제시. ·폐기물 보관 시 보관장소의 위치, 저장 용도, 용량 및 보관기간 등을 총괄표로 작성·제시하여야 함. ·폐기물보관소의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 ·위탁처리 시 수거일자 이전 발생 폐기물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 ·폐기물처리현황 총괄표와 비교 가능 하도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총괄표작성 계획을 수립 하였음 	반영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및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해양생태도 등급제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82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및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해양생태도 등급을 제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역 주변해역에 마을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 환경 평가 분야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어업권에 대한 환경영향을 구체적이며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함.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시험결과와 해양 동·식물상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영향결과를 도면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시험결과와 해양 동·식물상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영향결과를 도면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연안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정합여부를 평가하고(연안용도지역과 기능구와의 정합 여부 포함)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연안용도 지역과 기능구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해양수산부	<p>I. 총괄</p> <p>○본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다수의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검토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검토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반영하고, 미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반영하고, 미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반영
		<p>II. 항목별 검토의견</p> <p>가. 해양동·식물상</p> <p>○사업지구 주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가 서식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잘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p> <p>-잠수조사 등을 통해 잘피의 정확한 종, 분포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p>	○잠수조사 등을 통해 잘피의 정확한 종과 분포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잘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반영
		<p>나. 대기질</p> <p>○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차량의 속도제한, 가설방진망 등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p>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주기적 살수, 차량의 속도제한, 가설방진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함	반영
		<p>다. 해양환경(수질포함)</p> <p>○공사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투입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시 대책요령 사전교육 및 충분한 방제장비를 확보해야 함</p>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업투입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시 대책요령 사전교육 및 충분한 방제장비 확보계획을 제시함	반영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해양수산부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수품항 및 주변해양의 정확한 수질·저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해양수질과 저질조사 2계절 이상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라. 지형·지질 ○사업시행시 석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석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석재공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석재원 공급계획 및 석재원 운반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마. 소음·진동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마을과 어항과의 접근성을 차단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공사시 주민과 협의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여부 결정하여야 함	○공사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반영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도 동부 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출하여야 함.(다만,「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도 해양항만과로 문의)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 전라남도 해양항만과로 승인내역을 제출하겠음	-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전라남도	○방파제 연장 및 파지제 설치 등 인위적인 공사로 해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변 어업권 및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주변 어업권 및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준설 및 매립시 부유토사로 인한 해양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물막이 설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질 악화 및 주변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부유토사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및 주변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 방안(오탁방지막 등)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공사시 준설후 준설토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한지 검토 하여 계획 수립 및 저감대책을 이행해야 함.	○공사시 준설후 준설토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한지 검토 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반영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정온시설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저감 대책 시행후에도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 설명 및 별도 저감방안 수립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공사시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3개 지점에 대해서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공사시행 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민 홍보를 실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여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반영
		○공사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법령 및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계획함	반영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시행하겠음	-
		○공사 및 운영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공사 및 운영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겠음	-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결과

구 분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	비고
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 (조○○ 외 5명)	○저는 수품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으로 항내 일부 낮은 수심과 일정하지 않는 파고로 선박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물김 위판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이용해야하는 광장 시설을 위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양장과 방파제 신설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설협소로 인한 어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물양장 및 방파제 신설·확장 계획을 수립함	반영
	주민 (용○○ 외 6인)	○본인은 30년 동안 수품항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수품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보강과 목도에 방파제를 신설하여 어민들의 불편해소를 바랍니다.	○시설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시설 보강과 목도 방파제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함	부분 반영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부</p> </div>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동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p> <p>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1388(2018.7.9.)초와 관련입니다. 2. 수동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수신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어항건설과), 진도군(국토건설) / 목포기연구청장</p> </div> <p>발조자 서명 환경영향평가과-2159 [2018. 8. 16.] 접수 녹색산업과-27080 [2018. 8. 1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8로 11,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영 / http://me.go.kr 담당과(과) (이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p> <p>〈 사업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동항 정비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강리 전연해상 ○ 규모 : 외곽시설 340m(서방파제 70m연장, 동방파제 60신설, 돌계 100m 신설, 파제제 110m 신설), 계류시설 550m(물양장 455m 신설, 신양장 95m 보강), 매립 25,210㎡ ○ 사업기간 : 착공 후 4년 ○ 사업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 </div> <p>I.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수동항 항내 정온도 개선과 노후화 된 어항시설의 정비를 위해 외곽시설과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검토·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매립지 위치와 규모, 매립 목적, 매립지 토지이용계획, 매립 필요성과 매립방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어항구역의 경우, 육상부와 해수부 면적을 구분하여 변경 전·후 어항구역 면적을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 ○ 급회의 어항개발 사업은 자연환경, 항내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입지와 배치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동측 물양장 설치예정 해역은 다양한 부착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양반조간대 지역으로 이 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1 - 7</p>
<p>- 따라서, 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둘째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파제제 110m 신설·설치사업 또한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매립예정지는 법정보호종의 서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료를 통해 본 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보호종(갈피류) 피해방지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함.</p> <p>II. 평가항목별 검토의견</p> <p>1. 자연생태환경 분야</p> <p>가. 동·식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측 물양장 설치 예정해역은 다양한 부착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양호한 양반조간대 지역으로 본 해역을 매립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계류시설 설치계획은 둘째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파제제 110m 신설·설치사업 또한 이안제 형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동·식물상에 대하여 1회 조사하고 결과의 종류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2계절 이상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조간대 저서생물과 해조·초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식지도도 작성·제시하고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갈피 서식지는 정확한 분포현황 파악을 위해 잠수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조간대 해조류에 대한 조사도 병행).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별표6(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대상지에 법정보호종(자연환경자산)이 서식하고,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는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2 - 7</p>	<p>제시하여야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초안)에 개발계획 대상지에 법정보호종 갈피류(가머리말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식지가 영향(부유물집 오염, 생육저해 등)을 미칠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134쪽, 147쪽), “환경요소별 저감방안”을 작성·제시하지 않았음. - 또한 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에는 피해기준, 피해영향 조사방법, 대체서식지 적지조사, 서식분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본안)에 “법정보호종(갈피류) 피해방지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대상 해역의 특성(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내 조류, 303°304쪽)과 수심도(서식수심 0~3m, 285쪽)를 검토한 결과, 대상종이 매립을 계획한 “등축을 앞질 시설지역”, “파제제 시설지역” 및 “동방파제신설 부근” 등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에 보호종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서식이 확인될 때에는 대체서식지 이식계획 및 개발계획 축소 등 피해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또한 부유물집 피해 영향권을 중심으로 법정보호종 정밀모니터링(관련분야 전문기관 등)한 잠수조사 실시를 실시하고, 피해가 확인될 때에는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적지조사를 실시 후, 관련분야 박사급 이상 전문가의 자료를 통해 적지지를 선정하고 이식 이후 영구방형구 설치, 이주에 따른 피해기준 설정 등 모니터링 계획(이주 후 3년2)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p>2. 대기환경 분야</p> <p>가. 대기질·악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전량 물양장 배후부지 매립제로 활용할 계획이므로(평가서 410쪽), 준설토의 안정화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3 - 7</p>

(그림 7) 관계기관 검토의견(환경부)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

- 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라 용수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서 234쪽)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용수공급량을 산정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용수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부처로부터 발생하는 오수를 「수질 바우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예정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을 참조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나. 해양환경

- 해양수질과 저질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2개월 이상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 공인된 표준물질(GRM)을 이용하여 최수율을 조사하고 본문에는 조사결과를 부록에는 분석기록지를 첨부·제시하여야 함.
- 3차원 해수유동실험을 실시하였으므로 수직 격자체계를 제시하고 조류 검증결과는 단순 시계열 그래프로만 제시하여 모델 재현기간 중 편차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각 정점별, 분조(4대 분조)별 조파상수를 이용하여 비교·검증하고, 그 검증치(연차, 에러율)를 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물결파산과 이동 예측은 잔차류의 검증이 중요하므로 연속조류 관측성과로부터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영향예측결과는 표중, 중층, 저층에 대해 대조기, 소조기, 최강 창조시, 최강 낙조시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유속변화도는 수직과 백분율(%)로 제시하여야 함.

- 침·퇴적실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정략성과 비정략성의 입력자료 중에서 모델링에 사용한 퇴적한계 판단용력, 침식한계 판단용력, 기준 침강속도 등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입력자료는 해외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용한 수치가 대상해역에 적합한 자료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오탉방지막 저감효율은 단일 오탉방지막 30%, 2중 오탉방지막 50%로 선정하되 예측결과는 대조기와 소조기 조건에서 창조시와 낙조시로 최대 확산범위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
- 부유사확산 실험결과는 확산농도뿐만 아니라 배경농도를 기준으로 공사로 인해 가증되는 농도를 백분율(%)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현·제시하여야 함.
- 해수교환을 실험 시 항 전체를 대상으로 예측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곳은 가장 안쪽의 항내측(문양장 내측)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개발사업에 호안을 신설·보관을 위해서는 사석은 대량 공급하여야 함에도, 금의 평가서(초안)에는 사석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396쪽)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서(본안)에 사석 공급·계획을 세부화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함.
 - * 「방안 및 어항공시 표준시방서(2012, 해양수산부)」 제5장(사석교표기)에 따라 사석별 적정 압축강도(내부사석 50, 피복석 100)를 석재원별로 분석·제시하고, 사석 공급은 석재원 선정 기준(석재원별 운반 거리, 운반비용 등 결정성 분석 등을) 명시.
- 석회성분이 포함된 사석과 피복석을 공사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갯녹음 현상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4.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사업지구 동측의 신규 용양장이 입지하는 지역은 해안 압박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있음. 따라서 동측의 신규 용양장 조성사업은 지양하여야 함.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량과 위탁처리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 종류별 총괄표를 제시(건설, 임목, 생활, 사업장,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된 폐기물량과 위탁처리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수거한 날짜와 양을 제시.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와 별도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연도의 근거자료를 제시.

< 표.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예시) >

날짜	관리대장에 기입된 폐기물명	관리대장에 기입된 폐기물종류 및 생성	위탁처리업체 수거일	위탁처리업체 수거량
18.01.00	0.5톤	폐성유(고성)	-	-
18.01.00	0.7톤	폐진유(고성)	-	-
18.01.00	1.2톤	폐성유(고성)	17.1.00	2.4톤

- 폐기물 보관 시 보관장소의 위치, 저장용도, 용량 및 보관기간 등을 총괄표로 작성·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보관소의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
- 위탁처리 시 수거일자 이전 발생 폐기물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
- 폐기물처리현황 총괄표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 표. 폐기물 보관 총괄표(예시) >

	보관용량(톤/일)	보관기간	수거업체	수거일자
지정폐기물(지정)	5	18.1.00-18.2.00	OO환경	18.2.1
생활폐기물	-	-	-	-
건설폐기물	60	18.1.00-18.2.00	OO그린	18.2.8
임목폐기물	117	-	-	-
사업장배출시설제폐기물	-	-	-	-
사업장폐기물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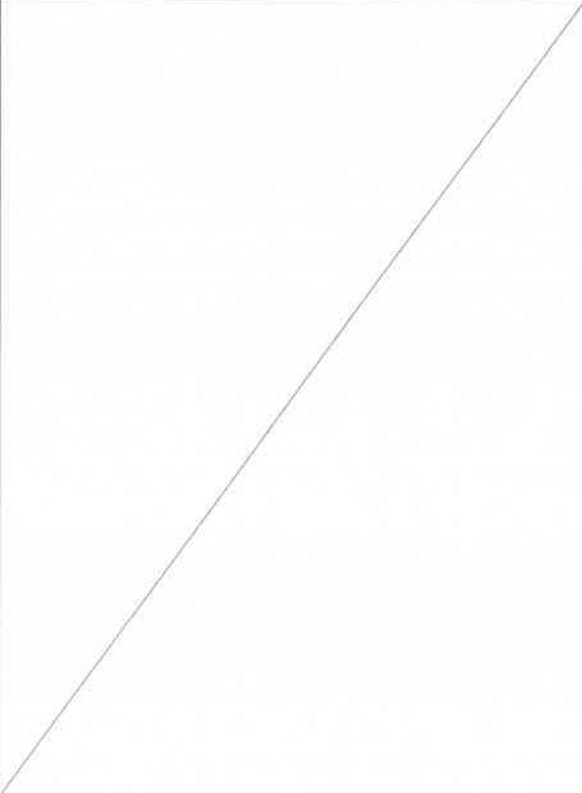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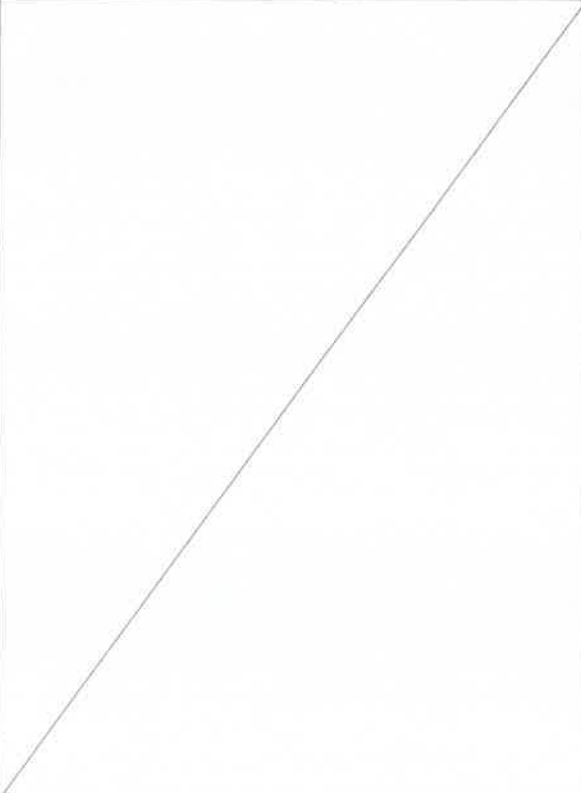
6. 기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및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해양생태도 등급제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82호 참조).
- 계획지역 주변해역에 마늘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 환경 평가분야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어업권에 대한 환경영향을 구체적이며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함.
 - *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부유사확산 수치모형 시험결과와 해당 등·식물상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영향결과를 도면 중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평가.
- 금의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연안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정합여부를 평가하고(연안용도지역과 기능구와의 정합 여부 포함)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끝.

(그림 계속) 관계기관 검토의견(환경부)

<p style="text-align: center;">있자리가 생기고 확인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p> <p>수신 진도군수(복색산업과장) (경유) 제목 수몰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제출</p> <p>1. 육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1388호(2018.07.04)와 관련입니다.</p> <p>2. 육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예정인 「수몰항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부 검토 의견을 통일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1부, 2부.</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청장</p> <p>발신처 시청 어촌어항과-4125 (2018. 8. 16.) 접수 복색산업과-24908 (2018. 8. 16.)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64 5층, 어촌어항과 / http://www.mof.go.kr / 대국민 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청문회(Clean Oceans),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p> <p>I.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다수의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검토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항목 별로 검토·반영하고, 미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p>II.항목별 검토의견</p> <p>가. 해양동식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주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갈매기 서식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갈매기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잠수조사 등을 통해 질피의 정확한 종, 분포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 ○ 해양 동식물상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계절별 조사를 추가하여 제시하여야 함 <p>나. 대기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 살수, 차량의 속도 제한, 가설방진망 등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p>다. 해양환경(수질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류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직업투입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시 대책요령 사전교육 및 충분한 방제 준비를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수몰항 및 주변해역의 정확한 수질·저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p>라. 지형·지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석재가 필요함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석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석재공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p>마. 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마을과 어항과의 접근성을 차단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공사시 주민과 협의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여부 결정하여야 함 	

(그림 8) 관계기관 검토의견(해양수산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p> <h2>전라남도</h2>  </div>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p> <p>제목 수출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일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1388(2018. 7. 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출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요청에 대한 협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p><input type="checkbox"/> 신청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출항 정비사업 ○ 위치 :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갈리 전면해역 일원 ○ 사업규모 : 외곽시설 340m, 계류시설 550m, 부지조성 25,210㎡ 등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p><input type="checkbox"/>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 우리 도 동부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도 해양항안과로 문의) ○ 방파제 연장 및 파재제 설치 등 인위적인 공사로 해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변 어업권 및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준설 및 매립시 부유토사로 인한 해양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물막이 설치 및 옹벽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질 악화 및 주변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공사시 준설유 준설토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저감대책을 이행해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차량 덮개, 살수시설, 세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잠수시설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 	<p>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저감대책 시행후에도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 설명 및 별도 저감방안 수립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감구시행하여야 함. <p>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라남도청</p> <p>수신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어항건설과), 진도군어복합수출항</p> </div> <hr/> <p>참조지</p> <p>시할 도민소통실-10217 (2018. 7. 20.) 접수 녹색산업과-25122 (2018. 7. 30.)</p> <p>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신탄액 오음길 1, 전라남도청 도민소통실 / http://www.joensam.go.kr/</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08. 10. 10:31 / 목포-진도 일련</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그림 9) 관계기관 검토의견(전라남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항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외산면 수용항 전면 해역 일원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본인은 30년 동안 수용항에서 김 굴레잡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수용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천원 불일항과 방파제 신설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개회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예' 합니다) : 필요요!]
 - 이후(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인)

[의견제출 절차도]

주민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서 초안 작성 → 의견서 검토 → 의견서 확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항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외산면 수용항 전면 해역 일원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본인은 30년 동안 수용항에서 김 굴레잡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수용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천원 불일항과 방파제 신설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개회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예' 합니다) : 필요요!]
 - 이후(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인)

[의견제출 절차도]

주민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서 초안 작성 → 의견서 검토 → 의견서 확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항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외산면 수용항 전면 해역 일원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본인은 30년 동안 수용항에서 김 굴레잡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수용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천원 불일항과 방파제 신설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개회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예' 합니다) : 필요요!]
 - 이후(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인)

[의견제출 절차도]

주민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서 초안 작성 → 의견서 검토 → 의견서 확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항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외산면 수용항 전면 해역 일원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본인은 30년 동안 수용항에서 김 굴레잡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수용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천원 불일항과 방파제 신설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개회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예' 합니다) : 필요요!]
 - 이후(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진도군수 귀하

(인)

[의견제출 절차도]

주민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서 초안 작성 → 의견서 검토 → 의견서 확정

(그림 10) 주민의견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장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위산면 수용원 진변 배역 읍촌		
사업자	성원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진도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저는 수용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으로 특히 월부 낮은 수심과 일정한 지는 비교적 선상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는 다르게 물길 위편이 (담당)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례 시설이 원숙하여 주민들 또는 관공객들이 이용해야하는 환경시설을 적당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별다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중앙지와 방파제 신장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계획 필요성(비행하는 곳에 내 합니다. 물은 [], 불필요)) - 이유(가치가 높고하고 보라하는 경우하면 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범구획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김민수*

진도군수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수용장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진도군 위산면 수용원 진변 배역 읍촌		
사업자	성원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진도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본인은 30년간 수용장에서 김 양잠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수용장은 시설이 오래 노후되고 선상지 부족으로 양잠을 하는 데 불편하여 시설확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설의 확충을 선상지 확보와 선상지 확보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유(가치가 높고하고 보라하는 경우하면 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범구획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김민수*

진도군수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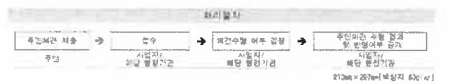
사업명	수용장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위산면 수용원 진변 배역 읍촌		
사업자	성원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진도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저는 수용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특히 월부 낮은 수심과 일정한 지는 비교적 선상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는 다르게 물길 위편이 (담당)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례 시설이 원숙하여 주민들 또는 관공객들이 이용해야하는 환경시설을 적당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별다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중앙지와 방파제 신장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계획 필요성(비행하는 곳에 내 합니다. 물은 [], 불필요)) - 이유(가치가 높고하고 보라하는 경우하면 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범구획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김민수*

진도군수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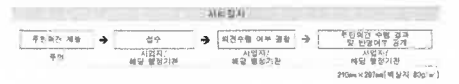
사업명	수용장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진도군 위산면 수용원 진변 배역 읍촌		
사업자	성원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진도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저는 수용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특히 월부 낮은 수심과 일정한 지는 비교적 선상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는 다르게 물길 위편이 (담당)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례 시설이 원숙하여 주민들 또는 관공객들이 이용해야하는 환경시설을 적당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별다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중앙지와 방파제 신장과 확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계획 필요성(비행하는 곳에 내 합니다. 물은 [], 불필요)) - 이유(가치가 높고하고 보라하는 경우하면 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범구획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김민수*

진도군수 귀하



(그림 계속) 주민의견

